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제 품 구 매 촉 진 및
판 로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 9. 29. 공포, '26.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2조의2)

-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생 략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용역의 대상금액 중 자치구·군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 ----- ----- -----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생략) ② ~ ④ (생략)	<u>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u> <u>장이 조달하는 경우: 같은 법</u> <u>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u> <u>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용</u> <u>역의 대상금액 중 자치구·군</u> <u>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u> <u>금액</u> <u>나. 가목 외의 경우: 「국가를</u> <u>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u> <u>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u> <u>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u> <u>액</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548